

대중의 선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은 반드시 알려야 할까? 발제자께서는 이 글의 문제의식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이른바 스타와 관계된 성폭행 고소, 고발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행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적 판단은 기본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한 종합판단(juris prudence)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발제자 역시 고려 사항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니고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발제자께서 제기하신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실정법의 태두리를 넘어서 만약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참고해 볼 수 있는 고려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발제자께서는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은 반드시 알려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 ‘뉴스가치’라는 근거를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이 관계된 범죄 사건과 성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뉴스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이 언론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평가는 인터넷 등 각종 소셜 미디어가 등장한 오늘날의 매체환경에서 변화된 언론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19세기 이후의 전통적인 언론의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 뉴스 소비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온갖 신문과 방송이 제공하는 뉴스를 매일 편집해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싣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는 포털에 집결되고, 그 곳에서 재가공, 재배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포털의 편집원칙은 전통 언론의 편집원칙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전통 언론의

편집원칙이 이른 바 ‘뉴스가치’에 있다고 한다면 포털 언론의 편집원칙은 ‘검색순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들이 초기화면에 띄우는 뉴스는 연예인의 스캔들이나 가십성 기사, 또는 생뚱맞은 정치적 주장처럼 대개 흥미 위주이거나 자극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알려야 하는 근거로서 ‘뉴스가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범죄혐의보도와 알권리’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발제자께서는 범죄보도의 두 가지 핵심원칙을 언급하면서 혐의에 불과한 사실을 보도할 때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유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단정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혐의보도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보도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명예훼손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명예훼손 여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제자께서는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별로 알권리를 세분화함으로써 ‘수사 개시 단계’, ‘수사 진행 단계’, ‘수사 결과 공개 단계’로 나누어 각각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별 보도 기준을 정하는 문제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알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현실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 권리의 취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도하는 기사가 과연 그러한 알 권리를 보장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기사의 성격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제자께서도 대부분의 범죄혐의보도는 “공익적 정보가치보다는 상업적 가치가 크며 알권리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호기심의 대상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권리 역시 전통적

인 저널리즘에서 유효한 개념으로서 포털 저널리즘 혹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 고소, 고발 사건의 배후에는 금전적 이득을 노리거나 한 사람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자하는 복수심 따위의 불순한 의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매체들은 사회적 감시나 알 권리를 실현하기보다는 시청자나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매체과위를 키우려는 의도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포털이 추구하는 뉴스 서비스의 목적은 오직 접속수와 방문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 고발의 당사자와 언론은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이 이 연극의 주연이라면 독자나 시청자는 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나 시청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냉소하면서도 이 연극에 자신도 모르게 참여함으로써 말초적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역사에서 ‘황색 저널리즘’ 혹은 ‘가십 저널리즘’(gossip journalism)이라고 하는 이런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보도행태는 그 연원이 오래고 좀처럼 사라질 수도 없는 필요악(necessary evil)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된 요즘, 가십 저널리즘은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로 인해 사회가 맑고 투명하게 되기는커녕,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애초에 이 발제문은 문제설정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문제의 방향을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은 반드시 알려야 할까?”가 아니라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알린다면 지켜야 할 한계는 무엇인가?”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지티브한 접근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타들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언론의 보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

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전적으로 언론의 자유인 것입니다. 다만 이 보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의 규정과 처리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유명 스타의 성범죄혐의보도는 그 자체로서는 보도를 해야 할 가치나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명 스타의 성범죄혐의보도는 그 자체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과도 무관합니다. 이처럼 유명 스타의 성범죄혐의보도에 대해 아무런 의무나 권리가 없다고 했을 때, 아마도 대중의 말초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이 소재는 보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유명 스타가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명 스타와 공동 주연을 맡고 있는 언론 역시 감당해야 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스타의 탄생에는 당사자와 엔터테인먼트회사, 언론 그리고 대중이 공모합니다. 흔히 스타는 대중의 연인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중이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란 대중에 의해 탄생하는 만큼 대중에 의해 버림받을 수 있는 숙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의 의의는 성범죄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에 어떠한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언론은 사인(私人)과 꼭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라는 본연의 모습을 망각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자 보도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라 유사 엔터테인먼트회사로 간주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언론인임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은 어떤 보도를 하든지 자신의 보도가 오직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언론인은 특정 행위의 수행자가 공인이나 사인이나 하는 것도 물론 고려해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일 것입니다. 언론인은 특정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늘 염두에 두고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름에서 오는 곤란과 곤경은 언론인의 숙명으로서 감내하는 것이 참 언론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